

## 『홍익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2006. 11. 01. 제정  
2007. 09. 01. 개정  
2008. 01. 23. 개정  
2012. 10. 17. 개정  
2013. 02. 14. 개정  
2014. 03. 12. 개정  
2014. 06. 16. 개정  
2014. 09. 03. 개정  
2014. 10. 27. 개정  
2014. 12. 16. 개정  
2015. 09. 16. 개정  
2017. 08. 3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11. 26. 개정  
2018. 12. 17. 개정  
2023. 04. 23.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 7조 제1항에 따라 『홍익법학』에 투고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23.>

**제2조(원고모집의 공고)** 편집위원장은 발간예정일(2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12월 말일) 2개월 전에 최소 1월의 기한을 두어 투고절차,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학연구소 홈페이지(<http://lawcenter.hongik.ac.kr/>)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6.>

**제3조(논문제출)** ① 『홍익법학』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간예정일 1개월 전(1월 말일,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 자정까지 원고를 투고하되, 법학연구소 홈페이지(<https://lawcenter.hongik.ac.kr/>)를 이용하여 투고한다. 수정논문의 투고도 또한 같다. 다만, 논문게재신청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견되는 경우에는 투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6.>

② 투고신청서에는 논문제목, 초록, 주제어, 필자성명, 소속과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1. 23.>

**제4조(논문게재료)** ① 논문게재료는 편당 1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② 세칙 제6조제1항상 기준에 따라 산출한 면수가 21면부터 30면까지 1면당 1만원의 초과게재료를, 31면부터 40면까지 1면당 2만원의 초과게재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 11. 26.>

③ 본 조의 게재료 징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6.>

**제5조(논문투고시의 유의사항)** ① 투고원고는 법학분야에 관한 것으로 연구소의 운영취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1. 23.>

②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는 『홍익법학』 편집위원회 운영세칙과 이 세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1. 23.>

③ 『홍익법학』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투고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개정 2014. 06. 16.>

④ 투고자는 동일자 발간 『홍익법학』에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허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08. 31.>

**제6조(논문작성방법)** ① 『홍익법학』에 게재하는 논문의 원고는 제3항을 기준으로 논문 본문(국영문초록과 참고문헌 제외, 각주포함)의 분량이 40면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편집회의에서 우수논문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6.>

② 투고원고는 다음 각 호의 체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8. 01. 23.>

1. 제목(한글 및 외국어)

2. 저자명, 소속(한글 및 외국어), 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함께 공동연구자명도 함께 표기한다.

3. 목차

4. 본문(항목번호는 I. 1. (1) 1) (가) 가) (a) a)의 순서로 함)

5. 주제어(5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6. 참고문헌

7. 초록(500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③ 투고원고는 '한글(한컴오피스)'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2023. 04. 23.>

1.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2. 글자모양 및 크기 : 휴먼명조체 11포인트(단 각주는 10포인트)

3. 줄간격 : 160%

④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투고원고의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원고 기타 논문의 특성상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외국어로 작성하되, 심사가능한 정도로 기술된 한글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1. 23.><개정 2014. 12. 16.>

⑥ 본 조의 외국어라 함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01. 23.><개정 2014. 12. 16.>

**제7조(문헌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08. 01. 23.>

1. 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10포인트 그리고 양쪽여백을 15포인트로 설정한다.

2. 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3. 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를 하여야 한다.

4. 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한글, 중국어 및 일어는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영어, 독어 및 불어는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제8조(각주의 내용)** ① 주석은 각주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개정 2023. 4. 23.>

1.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

-단행본(저서): 저자명, 『서명』, 판수(발행처, 출판연도), 인용면. [예: 허균, 『증권거래법』, 제2판(삼우사, 1998), 100면]

-정기간행물(논문):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수(발행처, 간행연도), 인용면.

[예: 홍길동, “증권의 개념”, 『증권법연구』, 제1권 제1호(한국증권법학회, 2000), 1면]

-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선생기념논문집 『기념논문집명』(발행처, 간행연도), 인용면.

[예: 홍길동, “증권의 개념”, 허균선생회갑기념논문집 『21세기 증권법의 방향』(삼우사, 2000), 1면]

2. 외국문헌

- 다음의 예, 또는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인용방식, 또는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사법정책연구원, 2017)의 방식에 따라 표기할 수 있음.

- 단행본(저서): Thomas Lee Hazen & David R. Rather, Securities Regulation, 6th ed.(Thomson, 2003), p. 233.

- 정기간행물(논문): Daniel R. Fischel, "The Economics of Lender Liability", Yale Law Journal, Vol.120, No.3 (1998), p. 233.

3. 기타

-국내판결은 선고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함.

[예: 대법원 1996. 8. 29 판결 94다39598]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의 경우 공저자는 중점( . )으로 표기함.

-동일논문이나 서명이 다시 나오면 “앞의 각주 3)의 책, 3면” 또는 “앞의 각주 3)의 논문, 3-5면”으로 표기함.

-구미문헌의 경우는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논문, 판결 및 법조항의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하면 됨.

-신문기사의 경우 신문명, 일자, 인용면을 표기함.

[예: 동일일보, 2000. 10. 3. A3면]

-페이지 단위는 면으로 하되, 여러 면에 걸쳐 인용할 경우는 인용페이지 사이에 대시(-)를 사용함.

-문헌이 맨 처음에 인용될 때에는 저자, 기관, 서명 등은 full name을 명기함.

②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③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④ 제6조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법학교수협의회에서 결정한「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0)」에 따른다.

**제9조(논문연구윤리 준수)** ① 투고원고는 흥익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포함된 논문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1. 23.>

② 투고원고는 논문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게재될 수 있다. <개정 2008. 01. 23.>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가 제1항에 위반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8.

01. 23.>

1. 투고원고를 『홍익법학』 논문목록에서 삭제
2. 투고자에 대하여 최소 3년 이상 『홍익법학』에 논문투고 금지
3. 위반사항을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고
4.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제10조(저작권, 이용권 등)** ① 『홍익법학』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01. 23.>

- ② 논문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홍익법학』에 게재될 경우, 저작권자(들)는 제1항의 무상허락 외에 논문의 원문공개, 사용, 복제 및 전송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무상이용을 허락한다. <신설 2014. 10. 27.>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0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